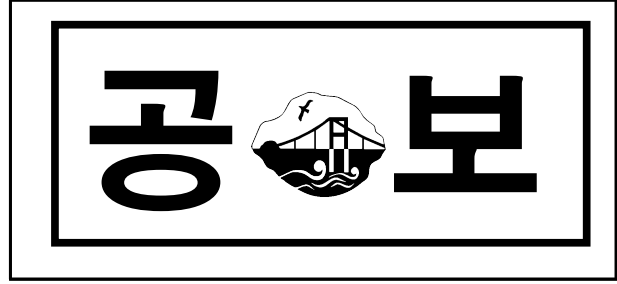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730호 2022. 10. 11.(화)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636호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2-135호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고시 3

남해군 고시 제2022-13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4

남해군 고시 제2022-138호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 사항 고시 5

남해군 고시 제2022-14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17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2-1235호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

남해군 공고 제2022-1248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23

남해군 공고 제2022-1258호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32

남해군 공고 제2022-1261호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임대조건) 현황 공고 38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성과담당관(860-3045, 행정 3045)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636호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0월 11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해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를 “제71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로 한다.

제 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의회” 를 “남해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로, “다음” 을 “다음과” 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행정위원회

가.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핵심전략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행정복지국(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행복과, 민원지적과, 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관광경제국(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가. 관광경제국(경제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해양환경국(해양발전과, 수산자원과, 환경과, 재난안전과, 상하수도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5조제2항 중 “잔임” 을 “남은”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을 “특정한”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2-135호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고시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단위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남 해 군 수

- 1.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관련

구 분	2022. 9. 이후 적용금액(천원/톤)	비 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856	순자산 : 17,310,715천원 시설용량 : 22,100톤/일 기준연도 : 2016년

- 2. 적용기간 : 당해 고시일부터 ~ 다음 고시일까지

남해군 고시 제2022-13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봉천(지방하천)
2. 성 명 : 남해군수(주민복지과장)
3.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4. 점용목적 : 남산경로당 신축 관련 자재 임시야적
5. 점용위치 :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491(111-3인근)
6. 점용면적 : 78㎡
7. 점용기간 : 2022. 9. 30. ~ 2022. 12. 31.

남해군 고시 제2022-138호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 사항 고시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에 따라 낙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 승객의 안전 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 낙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한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남 해 군 수

1. 적용 범위

이 고시는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의 낙시어선업자 (이하 “낙시어선업자” 라 한다) 와 선원(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낙시어선 안전요원” 포함) 및 그 낙시어선의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영업시간의 제한

낙시어선업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 항해용 레이더 등 야간 항해장비 미설치 낙시어선 또는 어선검사증서 상 야간 항해 금지 낙시어선
 -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으로 한다.(기상청 발표기준)
- 나. 항해용 레이더 등 야간 항해장비가 설치된 낙시어선 중 어선검사증서 상 항해 가능 시간에 관한 제한 규정이 있을 경우
 - 03: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3. 영업구역 제한

낙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법 제27조에 따른 구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낙시어선업 영업을 금지한다.

- 가. 군사 및 국가기간산업 보호상 규제되어 있는 해역
- 나. 야간 어로 및 항해제한·금지수역
- 다. 다른 법령(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
- 라. 간출암
- 마. 남해군의 육지부(유인도서 포함)를 기점으로 3해리 밖의 수역(선외기 설치어선 중 3톤 미만의 낙시어선에 한한다)
- 바. 낙시어선업자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상 잡종선(목재류, 합성수지 등)을 부설하고 그 구조물의 상판에 승객을 하선시켜 영업하는 행위

4. 안전운항 및 질서유지 사항

- 가. 낙시어선업자는 낙시어선의 안전 운항, 사고방지 및 낙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37조 제1항을 포함한 제 반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 나. 낙시어선업자는 낙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운항,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 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승객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다.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하 "낙시어선업자등"이라 한다)은 무인도, 갯바위 등에 승객을 안내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승객의 요구 또는 기상악화 등 필요시 하선한 승객 모두를 신고 입항하여야 한다.
- 라. 낙시어선업자등은 술에 취한 사람, 정신질환자 및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의 사람 등 승선에 부적합한 사람을 승선시켜서는 아니 된다.
- 마. 낙시어선업자등은 「어선법」 제5조의2 제1항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등) 또는 통화가 가능한 무전기,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를 영업 중인 낙시어선에 설치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중단하여 연락이 두절되면 아니 된다.
- 바. 낙시어선업자등은 낙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출항할 때부터 입항할 때까지 낙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낙시어선에 승선한 모든 인원(낙시어선업자, 선원, 승객 등)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 하여야 한다.
- 아. 낙시어선업자등은 출항 전에 낙시어선의 안전 점검, 기상상태 확인 등 안전운항에

- 필요한 조치를 하고 승객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한다.
- 자. 낚시어선업자등은 법에서 금지하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조종하거나 그러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차. 낚시어선업자등은 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정하는 운항 규칙을 준수하여 낚시어선을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한다.

5. 속력제한

- 낚시어선업자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는 10노트 미만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 가. 남해군 지족해협 내에서 운항할 때
- 나.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운항할 때
- 다. 양식장, 정치망어장, 조업 중인 어선의 주변을 운항할 때

6. 낚시어선업자등의 준수사항

- 가. 낚시어선업자등은 [별표 1]에 따른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낚시어선 신고 확인증」과 [별표 2]의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및 [별표 3]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문」을 낚시어선에 게시하여야 한다.
- 나. 낚시어선업자등은 출항하기 전에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의 보호,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한 내용을 해양수산부 고시(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한 승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다. 낚시어선업자등은 낚시어선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 제2항의 승선자 명부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 라. 낚시어선업자등은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 마. 낚시어선업자등은 승객을 다른 시·군의 관할구역으로 안내할 경우에는 그 관할 시장·군수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에 따라 고시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바. 낚시어선업자등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낚시어선을 출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기상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 (2) 기상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호우·대설·폭풍해일·태풍·강풍·풍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우

- (3) 기상청장이 위 (2)목에 따른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표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알리기 위한 정보를 발표한 경우
-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 (5)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다만, 별표 1 제1호 카목 및 타목에 따른 설비를 갖추고 군수가 영업을 제한하지 않는 시간대에 영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어선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이 해상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 낚시어선업자등은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고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 (2) 충돌, 좌초 또는 그 밖에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 낚시어선업자등은 영업중에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회수 및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자. 낚시어선업자등은 낚시장소(갯바위 등)에 하선하는 때에는 출항시 또는 승객 하선 후에 승객별 하선지점을 출입항신고기관에 알려야 한다. 승객을 안내 이후 승객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변동사항을 알려야 한다.(단, 하선지점은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도서명, 연안지명 등으로 한다.)

차. 낚시어선업자등은 갯바위 하선승객을 철수시킬 때에는 일일 2회(13:00, 22:00) 철수승객 명단을 출입항신고기관에 알려야 하며, 통보시기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13:00통보는 철수 승객 인원통보를 명단통보로 인정, 22:00 이후 또는 그 이전 출항한 승객 중 통보 시까지 철수한 승객 명단 통보)

7.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 가.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나. 낚시어선 승객은 낚시어선업자등이 승선자명부 작성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승선자명부의 내용을 거짓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 다. 낚시어선 승객은 낚시어선업자등으로 부터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의 보호, 수질오염 방지 등에 대한 승객의 준수사항을 교육받고 이에 따라야 한다.
- 라. 낚시어선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마. 낚시어선 승객은 승선할 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 확인하고 미 신고 어선일 경우에는 승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 낚시어선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2) 구멍조끼 착용 지시 및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 (3)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4) 영업시간 외 항행, 영업구역 외 장소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 (5) 인명구조장비나 기타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저해하는 행위
 - (6)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 무단 취사, 야생 동·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
- 사. 낚시어선 승객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안전을 위한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아. 낚시어선 승객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정하는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등을 준수하고 체장미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시에는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2020. 9. 25.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시행)
- 자. 낚시어선 승객은 낚시중에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회수 및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8. 기타

- 가. 미FDA에서 실시하는 지정해역 점검기간에는 지정해역 내에서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
- 나. 낚시어선업자, 선원 및 승객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남해군 고시(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등 낚시관련 법령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부 칙

-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고시 제2021-119호는 폐지한다.

[별표 1]

낙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

구 분	설 비
1. 안전·구명 설비	<p>가.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이 중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p> <p>나. 최대승선인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p> <p>다. 지름 10mm 이상, 길이 30m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p> <p>라.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p> <p>마. 난간 손잡이(hand rail)</p> <p>바. 유효기간 이내의 비상용 구급약품세트(붕대, 거즈, 소독약, 해열제, 소화제가 포함되어야 한다)</p> <p>사. 자기점화등(自己點火燈) 1개 이상</p> <p>아. 최대승선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낙시어선에 한정한다)</p> <p>자. 선박 자동식별장치(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낙시어선에 한정한다)</p> <p>차. 승객이 이용하는 선실에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낙시어선에 한정한다)</p> <p>카. 항해용 레이더(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낙시어선에 한정한다)</p> <p>타. 위성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를 말하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낙시어선에 한정한다)</p> <p>파.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燈,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영업하는 낙시어선에 한정한다.)</p>
2. 소화설비	<p>가. 총톤수 5톤 미만 낙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간이식 소화기</p> <p>나. 총톤수 5톤 이상 낙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p>
3. 전기설비	낙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설비
4. 그 밖의 설비	<p>가.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p> <p>나. 용량이 40리터 이상인 쓰레기통 2개 이상</p>

비고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 중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설비는 같은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안전·구명설비의 시행시기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개별 방침에 따른다.

[별표 2]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

1. 게시판의 제작기준

가. 재질 : 아크릴 등 색이 변하지 않는 재질

나. 색상

1) 글씨 : 검은색

2) 바탕 :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흰색

승객 준수사항  노란색

다.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 : 게시판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되,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래(게시방법의 예시)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

2. 게시판의 부착장소

해당 낙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방법의 예시)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p>승객 준수사항</p> <p>※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표기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 .

승선정원 ()명

승객 준수사항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사항을 게시하오니 낙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낙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구멍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2. 낙시어선 승객은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하 “낙시어선업자등”이라 한다)이 승선자 명부 작성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승선자 명부의 내용을 거짓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3. 낙시어선 승객은 낙시어선업자등으로 부터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의 보호, 수질오염 방지 등에 대한 승객의 준수사항을 교육받고 이에 따라야 한다.
4. 낙시어선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낙시어선 승객은 승선할 어선이 낙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 확인하고 미 신고 어선일 경우에는 승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낙시어선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나. 구멍조끼 착용 지시 및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 다.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라. 영업시간 외 항행, 영업구역 외 장소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 마. 인명구조장비나 기타 낙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저해하는 행위
 - 바.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 무단 취사, 야생 동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
7. 낙시어선 승객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안전을 위한 낙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8. 낙시어선 승객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등을 준수하고 체장미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시에는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9. 낙시어선 승객은 낙시중에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회수 및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3]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게시용) <예시>

1. 안전사고 예방

안전한 승하선 방법

- 선박이 선착장 또는 갯바위 등에 안전하게 접안한 후 선장의 승하선 지시에 따라 질서있게 차례대로 승하선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와 사용법

- 낙시어선 승선시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으로부터 검정을 받은 제품으로 합격표시가 된 구명조끼 사용

장비명	보관장소	사 용 법
구명조끼	보관장소를 기재	① 몸에 걸친 다음 목끈을 맨다 ② 허리끈을 조여서 매듭이 풀리지 않게 맨다 ③ 가슴끈을 조여서 매듭이 풀리지 않게 맨다 ④ 호각을 불어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구명뗏목	보관장소를 기재	고정줄을 풀고 바다에 투하, 팽창하여 뗏목이 만들어지면 질서있게 뗏목에 승선
구명부환	보관장소를 기재	물에 빠진 사람을 향해 던져 물 위에 떠 있도록 하여 사용
구명줄	보관장소를 기재	상황에 따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람이 이동할 수 있도록 사용
소화기	보관장소를 기재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제거한 후 호스를 화재 쪽을 향하여 분사

비상신호

- 장음 3회(호각), 음성방송, 구두로 비상 상황 전파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 집합장소 : 갑판
- 피난요령 : 구명뗏목에 승선 또는 선미로 이동 등 상황에 따라 선장(선원)의 지시에 따라 피난

인명구조와 관련된 기관의 유선번호

- 사천해양경찰서 : 상황실 055-830-2542(122접수)
- 삼천포어선안전조업국(구,어업정보통신국) : 055-833-6413
- 남해군청 : 당직실 055-860-3222

유사시 대처요령

- 승 객 : 유사시 선장(선원)에게 상황을 신속히 알림
- 선장(선원) : 상황에 따른 필요한 응급조치를 한 후 관련기관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여 해경정 등의 도움을 받도록 조치

2. 주요 낚시어종의 포획금지 체장·체중 등 수산자원 보호

어 종	금지기간	금지체장·체중
주꾸미	5. 11 ~ 8. 31	-
갈 치	7. 1~7. 31 (근해채낚기, 연안복합,제외)	18cm이하(항문장)
문치가자미	12. 1 ~ 익년 1. 31	17cm이하
넙 치	-	35cm이하
감성돔	5. 1 ~ 5. 31	25cm이하
돌돔·참돔	-	24cm이하
농 어	-	30cm이하
볼 락	-	15cm이하
붕장어	-	35cm이하
참문어	5. 24 ~ 7. 8	

※ 근거 :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 위반시 : 수산자원관리법 제7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

- 음식물, 담배 등 각종 쓰레기는 바다에 버리지 말고 선미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협조 바람

4. 기타 사항

** 선박내 음주금지 등 선박 및 지역별 여건에 따라 승객에게 추가로 전달할 내용 등을 안내*

※ 안내(예)를 참고하여, 선박의 구조 및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 작성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방송용) <예시>

안녕하십니까? ○○호 선장(선원) ○○○입니다.
저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여러분에게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안전한 승·하선 방법

- 선박이 선착장 또는 갯바위 등에 안전하게 접안한 후 선장의 승·하선 지시에 따라 질서있게 차례대로 승·하선 하시기 바랍니다

2.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와 사용법

- 낚시어선 승선시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으로부터 검정을 받은 제품으로 합격표시가 된 구명조끼 착용하시기 바라며, 선내에서 음주는 절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명조끼는 선실 좌우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① 몸에 걸친 다음 목끈을 맨다 ② 허리끈을 조여서 매듭이 풀리지 않게 맨다 ③ 가슴끈을 조여서 매듭이 풀리지 않게 맨다 ④ 필요한 경우 호각을 불어서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 구명뗏목은 선미우현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사고시 고정줄을 풀고 바다에 투하 하면 팽창하여 뗏목이 만들어지면 질서있게 뗏목에 승선하여 구조를 기다리면 됩니다.
- 구명부환은 선미 좌현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물에 빠진 사람을 향해 던져 물 위에 떠있도록 사용하면 됩니다.
- 구명줄은 조타실 외측 좌우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상황에 따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람이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사용하면 됩니다.
- 소화기는 선미 및 선실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제거한 후 호스를 화재 쪽을 향하여 분사하면 됩니다.

3. 비상신호

- 호각의 경우에는 장음 3회이며, 음성방송 또는 구두로 비상상황을 전파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 요령

- 비상시 집합장소는 갑판이며, 피난 요령은 구명뗏목에 승선 또는 선미 이동 등 상황에 따라 선장(선원)의 지시에 따라 피난하시면 되겠습니다.

5. 인명구조와 관련된 기관의 유선번호 및 유사시 대처요령

- 관련기관의 유선번호는 사천해양경찰서는 055-830-2542이며, 삼천포어선안전조업국은 055-833-6413이고, 남해군청은 055-860-3222입니다.
- 유사시 상황을 선장(선원)에게 신속히 알려주시면, 선장(선원)은 상황에 따른 필요한 응급조치를 한 후 관련기관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여 해경정 등의 도움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포획금지 체장·체중 등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 주요 낚시 어종별 포획·채취 금지 체장·체중 및 금어기는 어선에 게시된 어종별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등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어업인이 위반시는 수산자원관리법 규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 선박에서 발생한 음식물, 담배 등 각종 쓰레기는 절대로 바다에 버리지 말고 선미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 선박 및 지역별 여건에 따라 낚시어선 승객에게 추가로 전달할 내용 등을 안내

※ 안내(예)를 참고하여, 선박의 구조 및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 작성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고시 제2022-14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4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로531번길 3 외 27건
- 도로명주소 변경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990번길 32-10 외 1건

연번	종전 주소	도로명 주소	효력 발생일	비고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055-860-3642~364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지정게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부여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호적발생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58-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로531번길 3	20220929	20090427	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3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삼주면 삼주리 2044	경상남도 남해군 삼주면 남해대로796번길 67	20220927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9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오곡리 1568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삼봉로73번길 29	20220927	20090427	삼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42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성소로 117-19	20220927	20090427	행정구역명을 이용. 배를 만들던 곳, 신신들이 사는 땅을 의미함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443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로90번길 57-20	20220927	20090427	무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688-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79번길 21-139	20220922	20090427	망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1180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화방로56번길 79-36	20220921	20121011	화방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535-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신로 544	20220920	20090427	고려 충신왕때 개칭한 창선의 옛 지명에서 유래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삼주면 삼주리 1270-20	경상남도 남해군 삼주면 삼주로 50	20220920	20090427	삼주면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원효대사의 전설에서 유래하였으며, 삼주는 모래비치가 위치하는 길임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415-3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남해대로 400-56	20220920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146-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신로790번길 105	20220920	20090427	흥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9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1002-8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탐동로 108-6	20220916	20090427	고현면 소재지를 지나가는 중심도로. 마을 중앙시장 입구에 탑이 있어 붙여진 이름임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9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양화곡로 325-11	20220916	20090427	행정리를 이용. 마을 주변에 버드나무 꽃(양화)이 피어 있고, 금자가 들어가는 다섯 군데의 산이 있다하여 유래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실천면 문리 431-1	경상남도 남해군 실천면 실천로775번길 13	20220915	20091023	실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7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351-1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가길 17-12	20220915	20100915	망운로10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첫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952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534-21	20220913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54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177-3	20220913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400-1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신로 1336-68	20220913	20090427	고려 충신왕때 개칭한 창선의 옛 지명에서 유래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275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석평로95번길 25-55	20220913	20140527	석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갈취리 94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서대로 3199	20220913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864-2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서대로 3213번길 40-2	20220913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1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46-1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남해대로 237-1	20220907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광천리 129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광천로51번길 13-13	20220906	20100915	광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광천리 1293-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광천로51번길 13-15	20220906	20100915	광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실천면 진목리 330-2	경상남도 남해군 실천면 실천로364번길 56	20220906	20090427	실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6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1500-2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로37번길 30	20220905	20090427	초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실천면 문항리 1486	경상남도 남해군 실천면 실천로 541-10	20220905	20090427	실천면 소재지를 지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덕월리 48-2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1180번길 39	20220901	2009042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8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변경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호적발생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사유	비고
건물번호변경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590번길 20-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590번길 32-18	20220627	20090427	서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변경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양화곡로 300-57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양화곡로 325-55	20220613	20090427	행정리를 이용. 마을 주변에 버드나무 꽃(양화)이 피어 있고, 금자가 들어가는 다섯 군데의 산이 있다하여 유래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2-1235호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효율성, 기능전환 등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중 남해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로 통합 운영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
- 나. 제4조(보조금의 지원)의 지원 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남해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남해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2년 10월 18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30,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 농업기술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951, 팩스 055-860-3983
이메일 kimjh625@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농업기술과 환경농업팀(전화 055-860-39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친환경농업육성 계획수립)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중전의 제3조)의 제목 “보조금의 지원”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으로 하고, 제1항제7호 중 “우렁이”를 “우렁이, 친환경자재”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하우스, 농기계 등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남해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남해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남해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2-1248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8일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598호	패류양식 (살포식)	바지락	창선 광천	50,000	2022.10.01 2032.09.30 (10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사포어촌계	205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599호	패류양식 (투석식)	전복	이동 화계	20,000	2022.10.01 2032.09.30 (10년)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화계어촌계	206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600호	패류양식 (투석식)	전복	삼동 물건	20,000	2022.10.01 2032.09.30 (10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은점어촌계	207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601호	패류양식 (투석식)	전복	남면 덕월	20,000	2022.10.01 2032.09.30 (10년)	남해군 남면 덕월리	구미어촌계	208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602호	패류양식 (살포식)	바지락	서면 노구	35,000	2022.10.01 2032.09.30 (10년)	남해군 서면 노구리	노구어촌계	209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603호	패류양식 (살포식)	바지락	서면 정포	50,000	2022.10.01 2032.09.30 (10년)	남해군 서면 정포리	정포어촌계	210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604호	패류양식 (살포식)	바지락	고현 갈화	50,000	2022.10.01 2032.09.30 (10년)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갈화어촌계	211호 재개발

※ '22/23년 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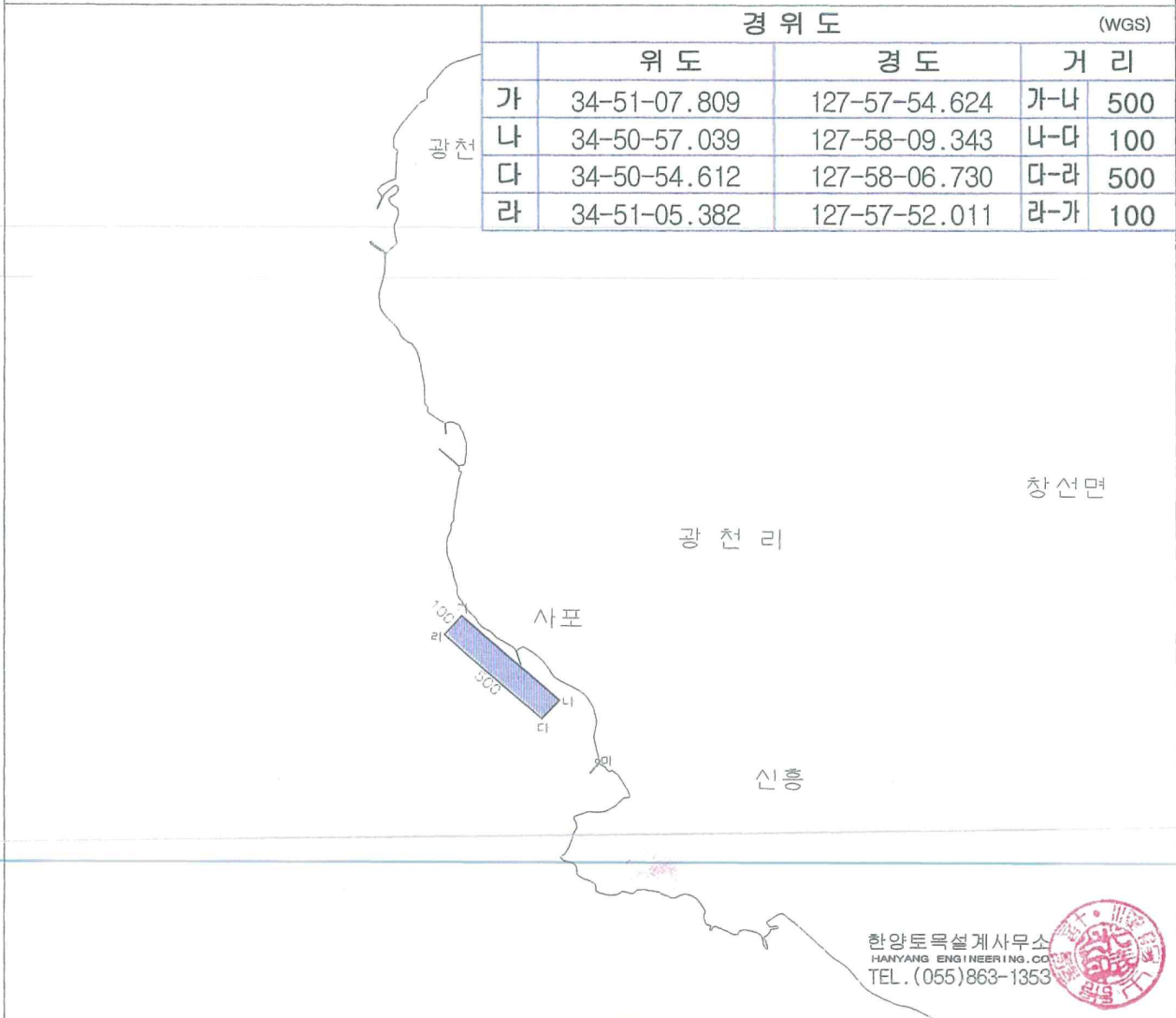
○ 양식어업권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205호	패류양식 (살포식)	바지락	창선 광천	50,000	2012.10.01 2022.09.30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사포어촌계	
남해양식 제206호	패류양식 (투석식)	전복	이동 화계	20,000	2012.10.01 2022.09.30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화계어촌계	
남해양식 제207호	패류양식 (투석식)	전복	삼동 물건	20,000	2012.10.01 2022.09.30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은점어촌계	
남해양식 제208호	패류양식 (투석식)	전복	남면 덕월	20,000	2012.10.01 2022.09.30	남해군 남면 덕월리	구미어촌계	
남해양식 제209호	패류양식 (살포식)	바지락	서면 노구	35,000	2012.10.01 2022.09.30	남해군 서면 노구리	노구어촌계	
남해양식 제210호	패류양식 (살포식)	바지락	서면 정포	50,000	2012.10.01 2022.09.30	남해군 서면 정포리	정포어촌계	
남해양식 제211호	패류양식 (살포식)	바지락	고현 갈화	50,000	2012.10.01 2022.09.30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갈화어촌계	

남해양식 제 59A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사포지선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 (마) N34-50-49.189, E127-58-15.200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²

축척 : $\frac{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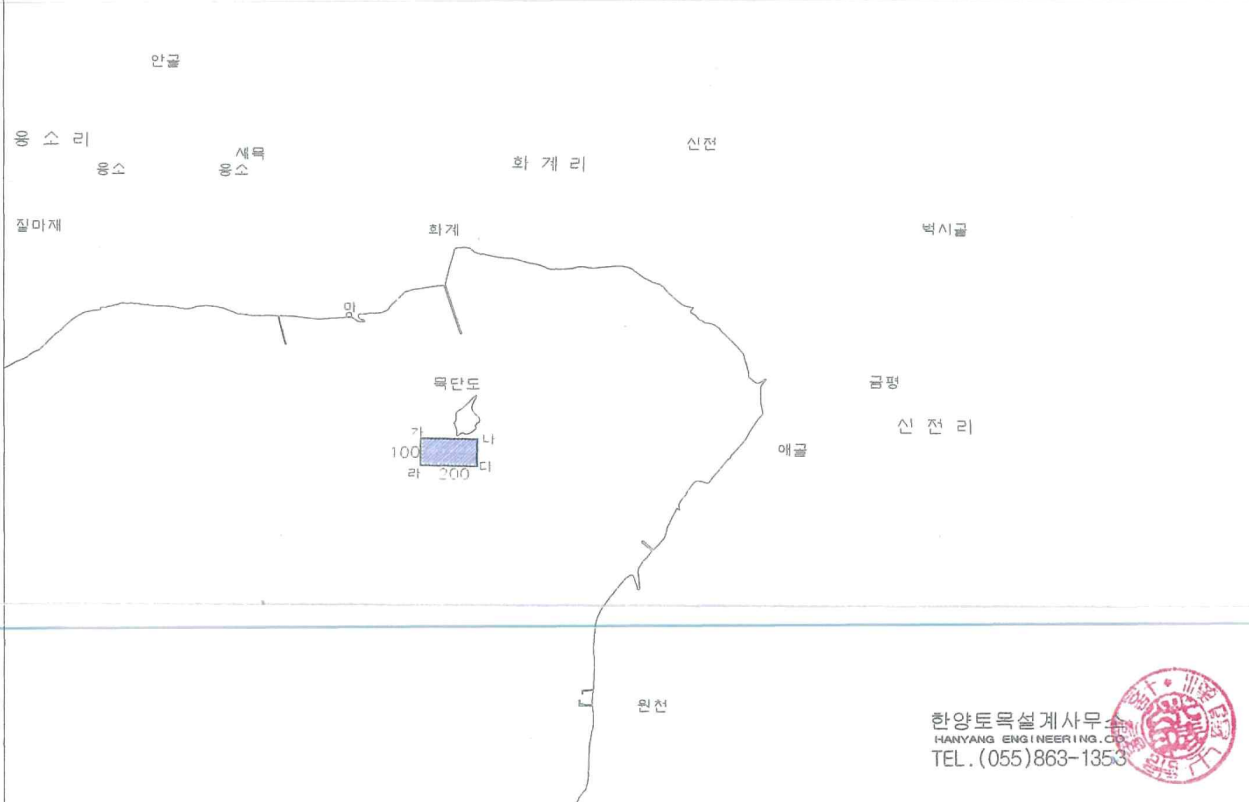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YANG ENGINEERING CO., LTD.
 TEL. (055)863-1353

남해양식 제 599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축척 : $\frac{1}{25,000}$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화계지선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 (마) N34-46-33.20, E127-56-18.45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적 : 20,000 m²

경 위 도 (WGS)				
	위도	경도	거 리	
가	34-46-18.400	127-56-28.814	가-나	200
나	34-46-18.371	127-56-36.679	나-다	100
다	34-46-15.126	127-56-36.655	다-라	200
라	34-46-15.155	127-56-28.791	라-가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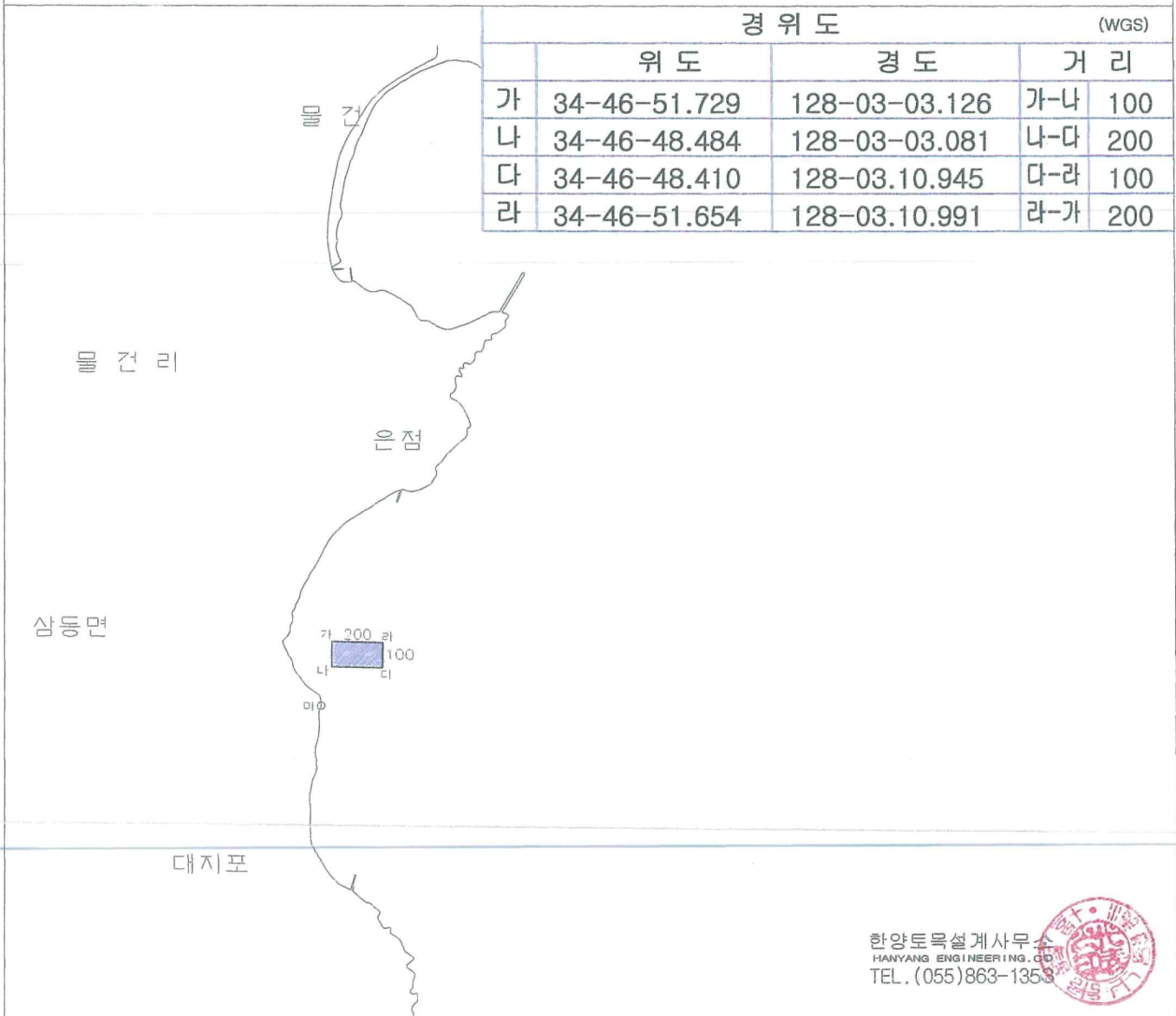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YANG ENGINEERING CO., LTD.
 TEL. (055)863-1353



남해양식 제 600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축척 : $\frac{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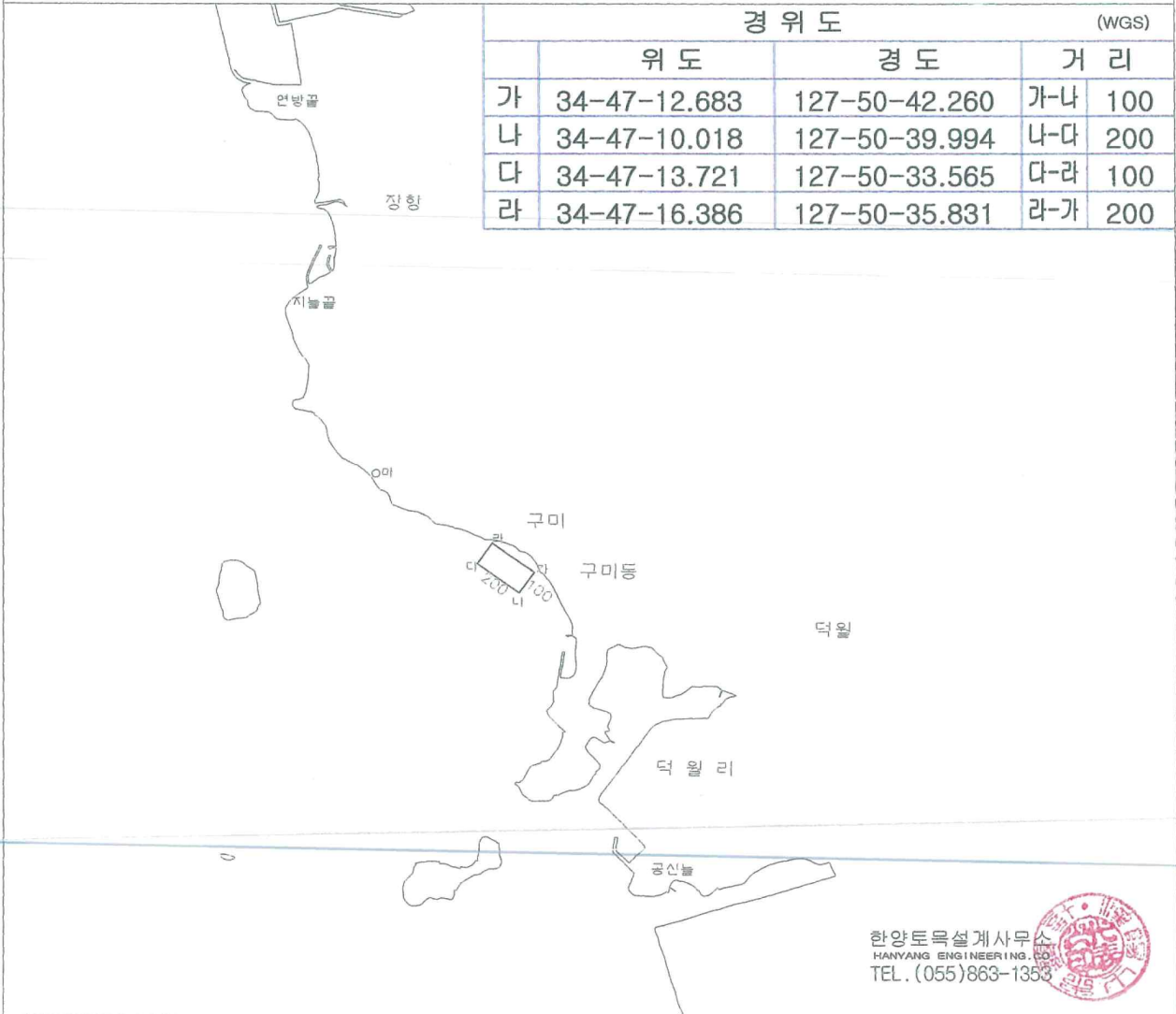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은점지선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 (마) N 34-46-43.39, E 128-03-01.49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적 : 20,000 m²



남해양식 제 601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축척 : $\frac{1}{25,000}$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덕월리 구미지선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남면 덕월리
 - (마) N34-47-25.23, E127-50-17.89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20,000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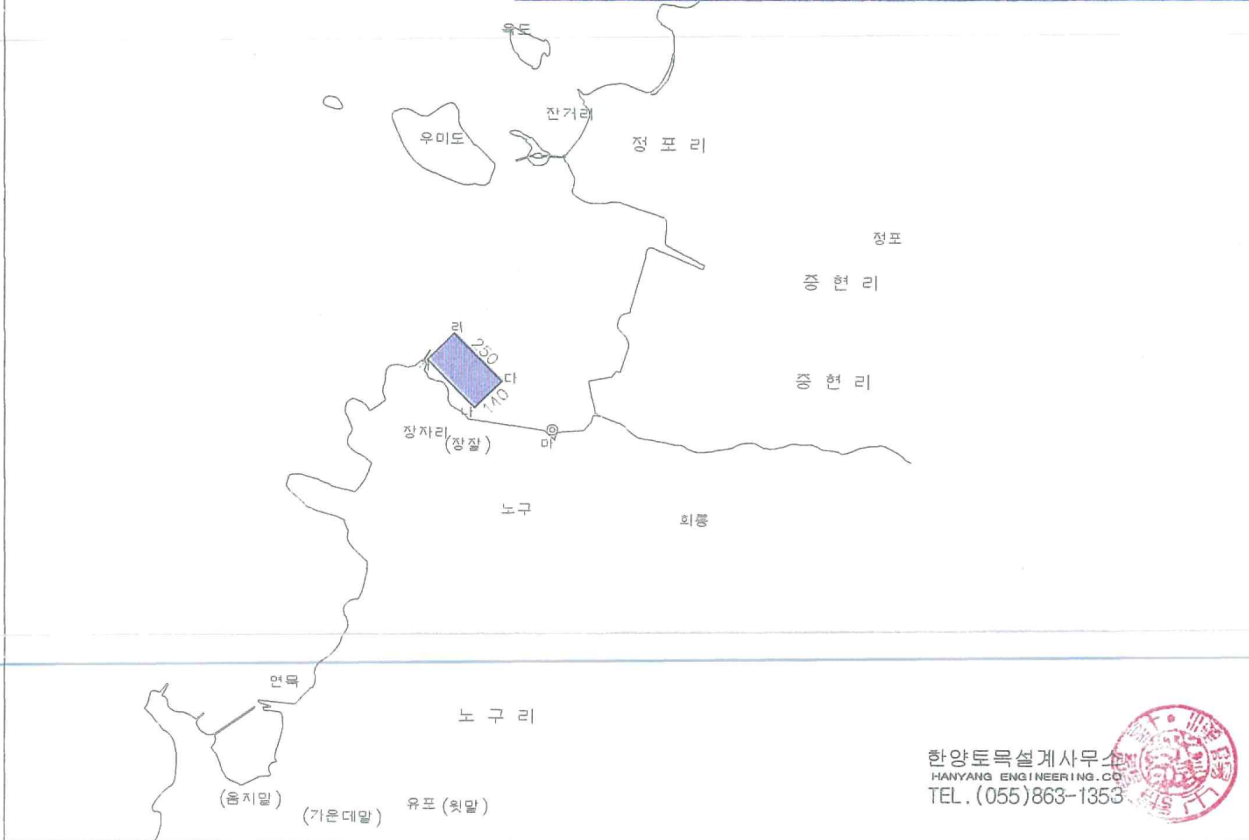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YANG ENGINEERING CO., LTD.
 TEL. (055)863-1353

남해양식 제 602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노구리 노구지선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서면 노구리
 - (마) N34-52-25.33, E127-49-33.64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35,000 m²

축 척 : $\frac{1}{25,000}$

경 위 도 (WGS)				
	위 도	경 도	거 리	
가	34-52-33.704	127-49-15.721	가-나	250
나	34-52-27.964	127-49-22.677	나-다	140
다	34-52-31.175	127-49-26.577	다-라	250
라	34-52-36.914	127-49-19.621	라-가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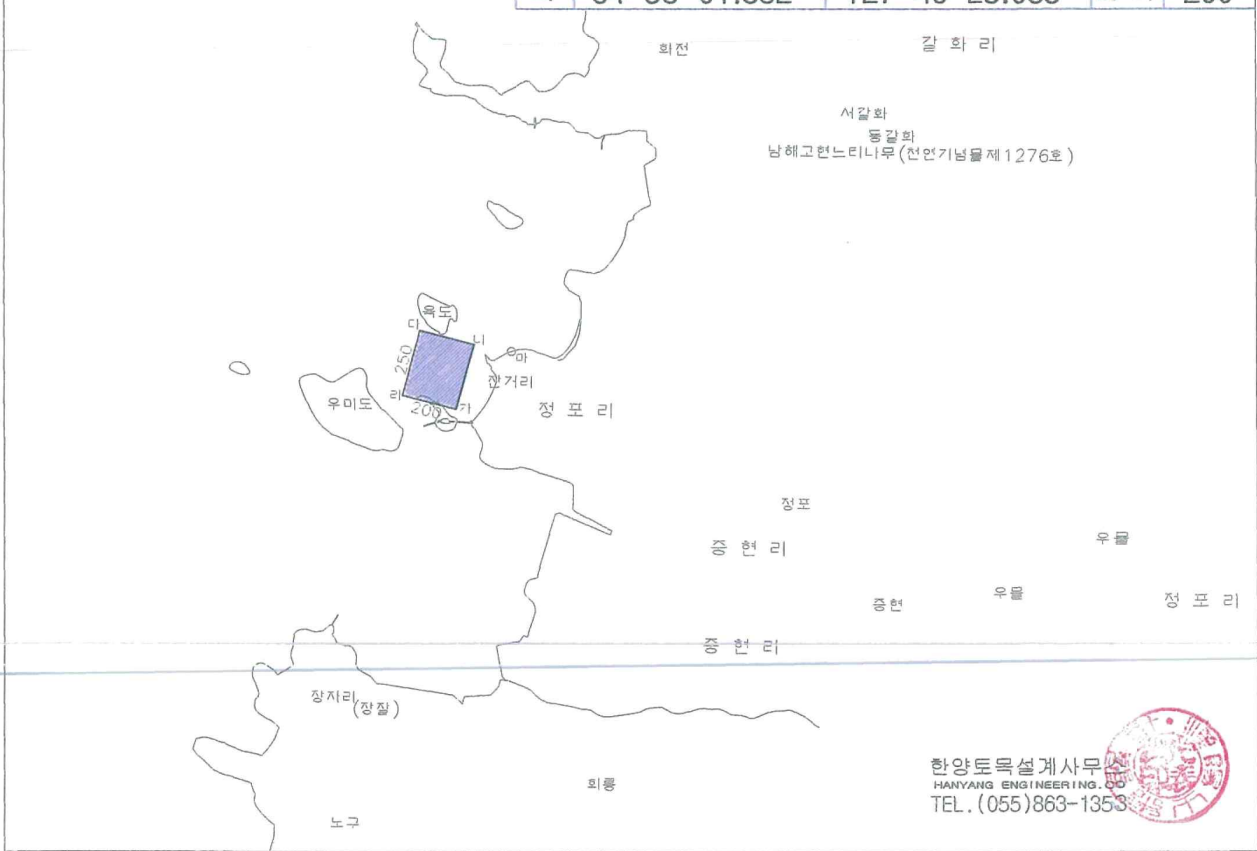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남해양식 제 603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정포리 정포지선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서면 정포리
 - (마) N 34-53-07.08, E 127-49-40.34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²

축척 : $\frac{1}{25,000}$

경 위 도 (WGS)				
	위도	경도	거 리	
가	34-53-00.000	127-49-32.723	가-나	250
나	34-53-07.865	127-49-35.125	나-다	200
다	34-53-09.449	127-49-27.488	다-라	250
라	34-53-01.582	127-49-25.085	라-가	200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YANG ENGINEERING CO., LTD.
 TEL. (055)863-1353

남해군 공고 제2022-1258호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2. 제정이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의 입법 형식이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되어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도록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의 폐지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2년 10월 21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30,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성과담당관 정책기획팀
- 2) 연락처 : 전화 055-860-3033, 팩스 055-860-3703
이메일 kjj0321@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성과담당관 정책기획팀(전화 055-860-30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 자치법규]

남해군 규칙 제1086호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으로 영향이 큰 사업임에도 민감성 등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을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등) 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군정 현안사항
2.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등)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

하여 기획감사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남해군업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심사 결정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책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하고, 이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와 사업내역서(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관리이력서로 대체한다)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로 지정한 정보는 제외한다.

제8조(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해당하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등록하고, 이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한 차례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부서, 유공 공무원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남해군 공고 제2022-1261호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임대조건) 현황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변경신고 또는 재신고한 임대 조건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남 해 군 수

1. 2022년 3분기 임대차계약(임대조건) 신고 현황

신고일	임대주택 도로명주소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2022-07-27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38번나길 24 1동 302실	5,000,000	300,000
2022-07-27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38번나길 24 1동 402실	1,000,000	250,000
2022-08-09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697번길 50 201호	3,000,000	400,000
2022-08-23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가길 24-28 303호	5,000,000	300,000
2022-08-23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가길 24-28 305호	5,000,000	270,000
2022-08-23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가길 24-28 306호	20,000,000	200,000
2022-08-23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가길 24-28 105호	3,000,000	220,000
2022-08-23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가길 24-28 202호	5,000,000	300,000
2022-08-23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가길 24-28 203호	5,000,000	300,000
2022-08-23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가길 24-28 103호	5,000,000	300,000
2022-08-26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가길 24-28 307호	15,000,000	-
2022-08-26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가길 24-28 101호	20,000,000	-
2022-08-26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가길 24-28 106호	15,000,000	-
2022-08-26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가길 24-28 205호	20,000,000	-
2022-08-26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가길 24-28 207호	20,000,000	-
2022-09-14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54-4 2동 202호	10,000,000	370,000
2022-09-14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54-4 2동 203호	10,000,000	330,000
2022-09-14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54-4 2동 303호	10,000,000	335,000